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
1994. 12. 2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20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9 회 정기회

· 제 5 차 내부위원회 (1994.12.26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- 수수료요율이 12년이상 미조정으로 인하여 원가보상율이 36.2%로서 현실성이 없음
- 관계법령의 개폐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조례항목을 폐지, 명칭 변경,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

나. 주요골자

○ 요율인상

· 대 상 : 8항목 (총30항목)

· 인상율 : 평균 6.8% 인상(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: '94.11.21)

※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30항목중 조정이 시급한 8항목 평균6.8%인상

구 분	기준	현행요율	조정요율	현행대조정	
				증 감 액	비 율
화 재 증 명	1 통	500원	600원	100 원	20.0%
소방시설 완비증명	"	500	600	100	20.0
공유재산 신규대부	2 건	500	600	100	20.0
공유재산 계속대부	"	300	350	50	16.6
도축검사 (소, 말)	1 두	400	500	100	25.0
도축검사(돼지, 양)	"	80	130	50	62.5
중기저당권설정등록	1 건	1,000	1,200	200	20.0
중기저당권변경말소	"	1,000	1,200	200	20.0

○ 폐지 및 명칭변경

· 대 상 : 50항목 (삭제 42항목, 명칭변경 8항목)

· 정비사유 : 관련상위법 개폐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동에 따라 조례
내용 중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
○ 신설항목

대 상 : 원자재소요량 증명

(가소요량 3,500원, 확정소요량 1,200원)

신설사유 :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어 신설

(대외무역관리규정 제5-3-3조)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현행 충청북도제증명발급 수수료요율을 조정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과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관계법령과 조례 등의 항복을 폐지 또는 명칭변경, 신설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총 30항목의 제증명발급 사항 중 불가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시급한 8개항목인 화재증명, 소방시설 완비증명,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규신청과 계속 신청, 소.말.돼지.양의 도축검사, 중기저당권 등록 및 이전등록과 변경 또는 말소신청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총50항목의 조례내용 중 관련상위법의 개폐 및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에 따라 존치필요성이 없는 42항목을 삭제함과 아울러 8항목에 대하여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며, 원자재 소요량 증명의 발급사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과 그에 따른
조례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며
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
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